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490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9 월 18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여주시노인등록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경기도 여주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635006호 [2020.09.22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9.12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
작성주기 및 공표주기	3년	4년	- 통계작성 예산 미확보 및 인력부족으로 주기 변경함